

보도자료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확립 경제민주화·창조경제 구현

2014년 11월 13일(목) 배포

2014년 11월 14일(금)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1월 13일(목) 낮 12시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담당과장: 황원철(044-200-4450)

담당: 박나연 조사관(044-200-4463)

26개 손해·생명보험사 보험설계사 위촉 계약서 등 개선 보험계약 무효·취소할 때 이미 지급한 수당을 무조건 환수하는 조항 등 시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26개 손해보험사·생명 보험사*가 사용하는 보험설계사 위촉 계약서와 수수료 지급 규정 등의 약관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여 수수료 환수 조항 등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하였음.
 - * 이번 조사 대상 26개 사업자들은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자진시정하였음.
 - ※ 조치 대상 사업자 내역 <별첨 2> 참조

Ⅰ │ 조사 배경

- □ 상당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고객의 민원으로 인해 무효·취소되는 경우 보험설계사에 이미 지급한 수당을 전액 환수하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음.
 - 보험계약의 무효·취소된 사유를 불문하고 적용되어 보험설계사들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등에 규정된 불공정 조항을 시정 하여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간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약관 실태조사를 추진하였음.

Ⅱ │ 주요 시정 내용

1. 보험계약의 무효·취소할 때 이미 지급한 수당 환수 조항

- ※ 26개 사업자 모두 해당
- □ (시정 전) 보험계약이 무효·취소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수당을 무조건 환수함.
- □ (시정 후)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환수하지 않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환수하지 않는 등의 예외 조항을 둠.

수정 전 약관 조항(예시)	수정 후 약관 조항(예시)
계약체결 후 해지, 취소, 무효된 계약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1안> (본문생략) 단, <u>보험설계사의 귀책</u> 사유가 없는 경우 환수하지 아니한다.
<u>그 계약으로 인하여 기 지급된 제 수</u> 수료를 전부 환수한다.	

□ 불공정 사유

- 고객의 민원 제기로 인한 보험계약의 소멸은 보험설계사의 불완전 판매와 같은 사유 이외에도 회사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보험회사의 상품설계 오류, 상품안내자료·약관·증권 등을 잘못 발행하여 회사 책임으로 보험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 보험설계사가 위탁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여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수당을 반환해야 하므로 보험설계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함.
- 다만, 양쪽 모두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보험계약 소멸의
 책임은 없으므로 수당을 환수하더라도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음.
 - 이에 따라 <2안>과 같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해 환수 하지 않는다고 시정하더라도 불공정성은 해소됨.

※ 사업자별 시정 내용

- 보험설계사의 귀책 없는 경우 환수 제외(14개사):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엘아이지손보, 한화손보, 롯데손보, 메리츠화재, 엠지손보, 교보생명, 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알리안츠생명, 피씨에이생명, 우리아비바생명
- 보험회사의 귀책 있는 경우 환수 제외(12개사): 아이엔지생명, 케이디비생명, 푸르덴셜생명, 현대라이프생명, 동부생명, 에이스생명, 동양생명, 농협생명, 케이비생명, 흥국생명, 농협손보, 흥국화재

2. 기타 시정사항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발송한 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은, 등기우편
발송 후 15일 상당의 기간이 지난 후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시정함.(동양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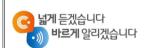
-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함(민법 제111조)
- □ 보험설계사에 부당하게 불리한 다음의 약관 조항들은 삭제함.
 - 보험설계사 간 금전 거래를 전면 금지한 조항(케이디비생명, 동양생명, 케이비생명)
 - 다른 보험사로 이직한 보험설계사가 재직 중인 보험설계사를 영입 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 조항(피씨에이생명)
 - 보험회사에 부과된 협회 제재금*을 보험설계사에게 전가하는 조항 (케이디비생명)
 - * 생명보험사는 공정한 모집 경쟁질서 유지를 위해 모집활동 중 금지사항과 위반 시 제재금 부과를 정한 '공정 경쟁 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을 맺고 있으며, 협정 위반 행위가 적발된 경우 보험사는 제재금을 생명보험협회에 납부해야 함.
 - 회사 내·외부에서 보험설계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을 결성하거나 참여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 조항(케이디비생명, 동양생명, 케이비생명)
- □ 재판관할을 보험회사 본사 소재지로 정한 조항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법원으로 하거나 보험회사 본사 소재지 또는 보험설계사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수정함.(동양생명, 에이스생명, 피씨에이생명)



기대 효과·계획

- □ 이번 조치가 보험설계사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되고, 보험회사와 보험 설계사 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 □ 앞으로 공정위는 금융·보험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불공정 약관 시정 등을 통해 거래 관행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계획임.
- ※ 별첨: 1. 보험설계사 현황
 - 2. 심사대상 사업자 일반 현황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별첨 1〉

보험설계사 현황

□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설계사는 보험업법 등에 규정된 요건 (교육 이수, 자격시험 등)을 갖춘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함. (2013년 말 기준 총 316.380명 수준)

※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①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시는 소속 보험 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보험설계사 현황*>

(2013년 12월 기준)

구 분	생명보험사(총 24개 사)	손해보험사(총 31개 사)
총계	144,792명	171,588명

- * 설계사는 교차모집설계사가 포함된 수치임.
- * 출처: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통계자료

□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회사에서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비율인 13월차 설계사 정착률은 전체적으로 50%를 넘지 못하고 있음.

<13월차 설계사 정착률>

(2012년 4월 1일 ~ 2013년 3월 31일 기준)

구 분	생명보험사 평균	손해보험사사 평균
정착률	35.7%	43.7%

* 출처: 금융감독원

〈별첨 2〉

심사대상 보험회사 현황

(2013년 회계연도 기준, 단위: 명, 백만 원)

연번	보험회사명	설계사 수	수입 보험료
1	삼성화재	44,714	13,790,425
2	한화손해	27,470	3,136,620
3	동부화재	25,786	7,898,232
4	현대해상	24,014	8,850,391
5	엘아이지손해	17,881	7,171,392
6	메리츠화재	17,866	3,719,029
7	흥국화재	5,658	2,257,070
8	롯데손해	4,007	2,128,387
9	엠지손해	1,861	412,319
10	농협손해	1,195	1,557,971
11	교보생명	21,264	8,731,439
12	신한생명	10,281	3,531,975
13	아이엔지생명	6,283	3,968,368
14	메트라이프생명	5,588	2,310,620
15	흥국생명	5,277	2,785,516
16	케이디비생명	4,778	2,086,069
17	알리안츠생명	4,454	1,456,923
18	동양생명	4,191	3,001,583
19	동부생명	3,195	1,241,065
20	농협생명	2,718	6,606,469
21	푸르덴셜생명	2,247	1,226,373
22	현대라이프생명	1,869	587,115
23	에이스생명	1,771	206,185
24	우리아비바생명	1,390	831,600
25	케이비생명	1,263	957,564
26	피씨에이생명	1,063	1,244,708

^{*} 출처: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통계자료